

# 징계규정

(Disciplinary Rules and Procedures)

2001.02.08. 제정  
2001.12.19. 개정  
2003.02.11. 개정  
2004.01.06. 개정  
2005.02.25. 개정  
2005.12.22. 개정  
2009.09.28. 개정  
2011.12.22. 자동개정  
2014.12.23. 개정  
2020.05.15. 개정  
2020.10.21. 개정  
2021.07.30. 개정  
2021.12.29. 전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서문) ① 이 규정은 사단법인한국에프피에스비(이하 '한국FPSB'라고 한다)가 인증하는 CFP 및 AFPK 자격인증자(정지자 포함)와 동 자격시험의 합격자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규정」 및 「재무설계업무수행기준규정(이하 "업무수행기준규정"이라 한다)」 등 한국FPSB의 다른 모든 규정과 규칙 및 방침(이하 "제반규정"이라 한다)에 저촉되는 경우 그 징계절차 및 처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② CFP 및 AFPK 자격인증자(정지자 포함)와 동 자격시험의 합격자 (이하 "대상자"라고 한다)는 해당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윤리기준 강화에 스스로 참여하여 고객보호와 재무설계업무관련 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선도하고 전문가로서의 윤리의식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사회의 기대와 신뢰에 충실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자격인증 등 관련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윤리위원회의 관장사항)「자격인증 등 관련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에 의하여 구성되는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대상자가 제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조사, 검토하고 적절한 처분을 결정(이하 "징계심의"라고 한다)하는 등 징계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자격시험응시자 또는 교육기관 등이「자격시험관리규정」또는「교육규정」등을 위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소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윤리위원장은 징계심의를 담당하는 소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소위원회에는 자격인증본부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소위원회는 윤리위원회 위원 중 3인 이상(당연직 위원 포함)으로 구성하며 CFP자격인증자인 위원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19조의 이의신청에 따른 징계심의를 위한 재심위원회는 윤리위원 전원 및 한국FPSB 경영기획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⑤ 소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의장은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은 본인 소속 직원 중에서 윤리담당자를 지정한다.

## 제2장 징계조사

제4조(윤리담당자 및 조사원) ① 윤리담당자는 징계조사 및 윤리위원회를 지원하고 징계조사 관련 보고서 작성 및 징계와 관련된 윤리위원회 개최시 심의내용을 포함하여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② 윤리담당자는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CFP자격인증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컨설턴트 등 전문가(이하 "전문가"라고 한다)의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③ 윤리담당자는 한국FPSB 소속으로 일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위반 등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업무 수행시 일상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한다.

④ 윤리위원장은 윤리담당자와 별도로 전문가 중에서 조사원을 선정 및 위촉하여 규정위반 및 징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징계조사) ① 이 규정에 따른 조사절차는 제7조 징계의 사유와 관련하여 한국FPSB가 인지하거나 한국FPSB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윤리위원장의 승인으로 개시한다.

- ② 윤리담당자는 적절한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조사보고서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윤리위원장은 윤리담당자에게 조사의 보완이나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조사보고서에는 대상자, 제반규정 위반 사실(이하 “징계대상사실”이라고 한다), 추정되는 징계사유, 대상자의 이전 징계기록, 증빙자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는 서류원본 또는 복사본, 사진, 녹취록이 첨부된 녹음테이프 등 징계 여부 판단 및 사실확인에 도움이 되는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 ④ 윤리위원장은 조사보고서 검토 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의 입증 가능성이 없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확인과 함께 신고기각으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다.
- ⑤ 윤리위원장은 조사보고서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징계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며, 징계심의를 위한 윤리위원회 일정을 확정한다. 다만, 윤리위원회 일정은 제6조의 회답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⑥ 윤리위원장이 징계심의를 개시를 결정하는 경우 윤리담당자는 대상자에 대하여 징계규정상의 징계심의 대상(이하 “징계심의 대상자”라고 한다)이라는 사실과 함께 심의할 사안의 내용, 제6조에 따른 회답이 필요한 내용 등을 서면으로 제38조의 통지 및 송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접 전달하거나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달한다. 이 경우 윤리담당자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심의할 사안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회답) ① 징계심의 대상자는 제5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징계대상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및 제5조의 요청사항 등에 대하여 회답을 하여야 한다.
- ② 징계심의 대상자는 징계대상사실에 대한 해명과 그 증거자료 등 해명자료를 회답시에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③ 징계심의 대상자가 서면으로 회답을 하는 경우 윤리담당자는 사실조사에 근거한 조사결과와 함께 징계심의 대상자가 제출한 해명자료(추가로 제시된 증거 포함)가 포함된 모든 자료(대상자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의 징계기록 포함)를 첨부한 최종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④ 징계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회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국FPSB는 징계심의 대상자가 제5조에서 통지된 징계대상사실을 이의없이 인정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윤리담당자는 그 내용을 윤리위원장에

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 제3장 징계의 사유

제7조(징계의 사유) ① 대상자가 고객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의 여부에 관계없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1.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업무수행기준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3. 한국FPSB의 다른 규정이나 규칙 또는 방침을 위반하는 행위
4. 국내법 또는 사법관할권이 있는 다른 나라의 형사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다만, 형사상의 소추가 징계절차 진행의 전제조건은 아니며, 또한 형사상의 소추면제 또는 무죄판결을 이유로 징계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5. 전문직업무정지의 사유가 되는 행위. 다만, 전문직업무정지처분이 징계절차진행의 전제조건은 아니며, 또한 전문직업무정지를 위한 혐의 또는 소의 면제나 기각을 이유로 징계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아니 한다.
6. 잠정적 자격정지의 사유가 되는 행위
7. 징계규정을 위반하거나 징계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8. 윤리위원회 또는 한국FPSB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응답하지 아니하거나, 윤리위원회, 윤리담당자 또는 조사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9. 한국FPSB, 국제FPSB, 한국FPSB의 자격인증자 또는 회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오해를 초래하거나 명예 또는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
10.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를 심히 저해하는 등의 전문가로서의 품행에 어긋나는 행위

② 제1항의 징계의 사유는 충분한 증거로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유죄판결(약식재판을 포함하는 한다. 이하 같음)을 증명하는 문서, 전문직업무정지,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정부 또는 업계자율규제기관의 문서, 직무정지나 면직처분을 나타내는 내용의 금융기관, 전문직 서비스제공기관, 기타법인 또는 단체의 문서는 유죄판결, 전문직업무정지, 자격정지, 제명처분, 직무정지 또는 면직처분의 사실에 대한 확정적 증거로 인정한다.

④ 윤리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유죄판결, 전문직업무정지, 자격정지, 제명처분, 직무정지 또는 면직처분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그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서만 조사하며, 해당

징계심의 대상자는 제3항에서 인정된 증거를 제외한 다른 증거의 부당성에 대하여서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제8조(보고의무) 징계심의 대상자는 음주 또는 약물사용과 관련된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전문직업무정지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통지 수령 후 10일 이내에 이를 한국FPSB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벌금형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제4장 징계의 형식과 처분

제9조(징계의 구분) 징계는 징계사유의 중한 정도에 따라 자격취소, 자격정지, 견책의 순서로 구분한다.

제10조(견책) 견책은 위반행위를 지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는 징계조치로서, 윤리담당자는 견책사실을 기재한 징계명령서를 제6장에 따라 징계가 확정된 징계 대상자(이하 "징계자"라 한다)에게 송달하는 징계조치이다.

제11조(자격정지) ① 자격정지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징계자의 자격인증을 정지하는 징계조치이다. 다만, 자격정지기간 중에는 한국FPSB의 어떠한 자격표장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CFP자격인증 및 AFPK자격인증을 포함하는 한국FPSB의 자격인증 가운데 어느 하나에 대한 자격정지의 처분은 다른 자격인증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징계처분의 발효일로부터 자격정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징계자에 대한 CFP자격인증 및 AFPK자격인증을 포함하는 모든 자격인증의 승인과 자격시험의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③ 윤리담당자는 자격정지의 사실을 기재한 징계명령서를 징계자에게 송달하고, 한국FPSB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광고 등 제14장의 징계처분의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윤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자격취소) ① 자격취소는 징계자의 자격인증을 영구히 취소하는 징계조치이다.

② CFP자격인증 및 AFPK자격인증을 포함하는 한국FPSB의 자격인증 가운데 어느 하나에 대한 자격취소의 처분은 다른 자격인증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징계자에

대한 CFP자격인증 및 AFPK자격인증을 포함하는 모든 자격인증의 승인과 자격시험의 응시자격도 영구히 취소된다.

③ 윤리담당자는 자격취소의 사실을 기재한 징계명령서를 징계자에게 송달하고, 한국FPSB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광고 등 제14장의 징계처분의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윤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자격시험 유효합격자에 대한 징계) 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다른 인증요건만 충족하면 자격인증자가 될 자격이 있는 자(이하 "자격시험 유효합격자"라 한다)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자격인증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견책 기록과 함께 자격인증의 승인
2. 3년(CFP 합격자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기간 자격인증의 승인정지
3. 자격인증의 승인거부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 자격시험 유효합격자에게 징계명령서를 송달하고, 한국FPSB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광고 등 제14장의 징계처분의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고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윤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징계처분 대상이 된 자격시험 유효합격자는 제32조의 규정에서 정한 정지 기간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자격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의 징계처분 대상이 된 자격시험 유효합격자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자격시험의 합격이 영구히 취소되며, 모든 자격인증의 승인과 자격시험의 응시자격도 영구히 취소된다.

## 제5장 잠정적 자격정지

제14조(잠정적 자격정지) ① 잠정적 자격정지란 징계심의 대상자의 징계사유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리위원장이 징계심의 대상자에 대하여 징계심의 절차와 별개로 징계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그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윤리위원장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인증자의 자격을 정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격인증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잠정적 자격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

1. 제28조에 규정된 중대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2. 제29조에 규정된 전문직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를 심히 저해한 때
  4. 파산신청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 하였을 때
  5. 파산선고나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의 개시심판을 받았을 때
  6. 윤리규정 제4장의 결격사유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
- ③ 잠정적 자격정지의 처분 은 징계심의 대상자에 대한 징계절차와 징계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징계심의 대상자가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여 관련기관 등에서 이의절차가 계류중임을 이유로 윤리위원장의 잠정적 자격정지처분의 권한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15조(잠정적 자격정지절차의 종료 또는 자격의 자동회복) 윤리위원장이 다음 각 호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진행중인 잠정적 자격정지절차가 종료되거나 또는 확정된 잠정적 자격정지처분이 취소되며, 자격인증자 자격이 자동으로 회복된다. 다만, 이러한 자격회복이 해당 징계심의 대상자에 대하여 진행중인 어떠한 징계절차에도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1. 잠정적 자격정지의 원인이 되는 형사상의 유죄판결 또는 전문직업무정지 등의 사유가 취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접수
2. 제14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증거의 접수

## 제6장 소위원회의 징계결의

제16조(징계심의) 소위원회는 제출된 조사보고서에 따라 징계사안의 사실관계 및 징계사유등을 심의하고 징계를 결의한다.

제17조(소위원회의 징계결의와 징계처분) ① 소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징계대상 사실이 제7조 징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의 입증 가능성이 없거나 위반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확인과 함께 다음의 조치

를 취한다.

1. 신고기각: 해당사안이 모두 사실일지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의 입증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신고를 기각하고 해당사안을 종결한다.
  2. 개선권고: 위반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동종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응방안과 기타 적절한 이행조건을 명령하는 개선권고장을 서면으로 발송하고 해당사안을 종결한다.
- ② 소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조치를 결의하고, 징계조치의 내용, 징계의 원인된 사실, 증거의 판단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징계결의서(이하 "징계결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한국FPSB 회장에게 송부한다.
  - ③ 한국FPSB 회장은 소위원회로부터 징계결의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확정하여 징계처분(이하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 ④ 한국FPSB 회장이 징계의 감경 또는 유예의 조치를 할 때에는 징계결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소위원회의 의결대로 징계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결의서에 확인의 서명을 하여야 한다.
  - ⑤ 소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의 징계기록을 참고하여야 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의 재발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결의할 수 있다.
  - ⑥ 소위원회는 징계조치와 함께 계속 교육의 이수조건 및 동종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응책의 이행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18조(징계명령서) ① 징계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윤리담당자는 징계처분의 사유, 내용 및 징계이행조건, 이의신청절차 등을 기재한 명령서(이하 "징계명령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제38조의 통지 및 송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접 전달하거나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달한다.

② 징계심의 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확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징계명령서에 별도의 발효일자가 명시된 경우에는 징계명령서의 발효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7장 이의신청

제19조(이의신청 및 재심위원회의 징계심의 등) ①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징계

자는 징계명령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윤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징계자는 이의신청서상에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징계자의 이의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 윤리위원장은 재심의 개시 결정 및 재심위원회의 일정을 확정하고, 윤리담당자는 확정된 재심위원회의 일정을 징계자에게 제38조의 통지 및 송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접 전달하거나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다.

제20조(재심위원회 출석의 요청) ① 이의신청서 제출시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징계자는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최되는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자신을 위하여 변론하고 증인과 증거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② 윤리담당자는 재심위원회의 기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이전에 재심기일통지서를 해당 징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38조의 통지 및 송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접 전달하거나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③ 기일통지서에는 지정된 재심위원회의 재심기일 및 장소를 명시하고 동시에 해당 징계자에게 자기자신을 위하여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권리와 증인을 반대 심문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의신청서 미제출의 효과) 징계자가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명령서에 기재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 제8장 재심위원회의 징계결의

제22조(재심위원회) 윤리위원장은 제19조 제3항에 따라 재심을 개시한다.

제23조(재심절차와 증거채택) ① 재심위원회는 징계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로 조사를 하고 증거 및 증인의 채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업무는 제4조와 제5조를 준용한다.

② 징계사유는 충분한 증거로 증명되는 경우에만 인정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장은 재심위원회의 선서를 주관하고 증거 및 증인의 채택여부 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며 재심위원회의 진행을 주관한다.

제24조(재심결의와 재심처분) ① 재심위원회는 징계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이의 신청의 기각, 징계처분의 감경 또는 취소 여부를 결의(이하 "재심결의"라고 한다)한다. 단, 재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감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심결의서에 변경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재심위원회는 재심결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심결의서(이하 "재심결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한국FPSB의 회장에게 송부한다.

③ 한국FPSB의 회장은 재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재심결의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징계자에 대하여 재심징계처분 등(이하 "재심처분"이라 한다)을 한다.

④ 한국FPSB 회장이 징계의 감경 또는 유예의 조치를 할 때에는 재심결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재심위원회의 의결대로 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결의서에 확인의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⑤ 징계자는 재심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5조(징계명령서의 송부) ① 재심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윤리담당자는 재심처분 내용 등을 기재한 명령서(이하 "재심명령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징계자에게 제38조의 통지 및 송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접 전달하거나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달한다.

② 징계자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원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고 유지되며, 재심처분에 의하여 원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된 때에는 취소 또는 감경의 효력은 원 징계처분 확정일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제26조(재심위원회의 결정) 재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안을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윤리위원장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장 중대범죄 등의 징계절차 개시

제27조(유죄판결 또는 전문직업무정지 확정시 조치) ① 중대범죄의 유죄판결 또는 전문직업무정지가 확정된 경우 재심위원회가 징계사안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 심문하고 징계를 결의한다. 다만, 중대범죄의 유죄판결 또는 전문직업무정지가 확정되기 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재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24조,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8조(중대범죄의 정의) 중대범죄란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1. 법정형이 장기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2. 사기, 배임, 횡령, 자금유용, 자산유용, 부당취득, 또는 절도에 해당하는 범죄
3. 동조 각 호의 범죄의 예비·미수(예비·미수범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또는 공모 행위

제29조(전문직업무정지의 정의) 전문직업무정지란 다음의 법인 및 단체 등의 징계조치에 따른 업무정지, 자격정지, 제명처분, 직무정지 또는 면직처분을 말한다.

1. 정부기관
2. 금융투자, 보험, 법률, 회계, 세무, 부동산 등의 전문자격을 인증하는 업계자율규제기관
3.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금융기관
4. 법률, 회계, 세무, 부동산 등 전문직서비스업무수행기관
5. 기타 관련법인 및 단체

## 제10장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에 따른 금지조치

제30조(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에 따른 금지조치) ①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의 처분이 확정된 자격인증자는 즉시 자격인증자로서의 업무를 정지하여야 하며, 한국FPSB의 어떠한 자격표장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의 처분이 확정된 자격인증자는 또한 한국FPSB의 자격인증자였다는 사실을 광고하거나 홍보하거나 명함 또는 편지지 등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장 자격회복

제31조(자격취소처분의 효과) 자격취소의 징계처분으로 자격인증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회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자격시험 응시를 통한 자격의 최초인증절차에 따른 신규자격인증도 허용되지 아니 한다.

제32조(자격정지 후의 자격회복) ①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대하여 다른 조건이 없는 경우 자격정지기간 종료 1개월 전부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자동으로 자격이 회복된다.

1. 해당자격의 자격인증신청서
2. 자격정지기간 중 자격표장의 사용중지 및 자격인증자로서의 업무정지와 다른 자격정지요건 및 자격정지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격정지 이행확인서
3. 「자격인증규정」에 따라 자격인증의 회복에 필요한 계속교육학점 취득증명서

② 1년을 초과하는 자격정지에 대하여 다른 조건이 없는 경우 자격정지기간 종료 1개월 전부터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기간 종료일 다음 날짜로 자격이 회복된다.

1. 해당자격의 자격인증신청서
2. 자격정지 기간 중 자격표장의 사용중지 및 자격인증자로서의 업무정지와 다른 자격정지요건 및 자격정지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격정지 이행확인서
3. 「자격인증규정」에 따라 자격인증의 회복에 필요한 계속교육학점 취득증명서
4. 갱신 작성한 윤리규정준수서약서

③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자격회복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격회복신청이 접수될 때까지 자격정지의 기간이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CFP자격의 정지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CFP자격과 AFPK자격이 모두 취소되며, AFPK자격의 정지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AFPK자격이 취소되고, 각 경우 모두 자격회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자격인증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시험 응시를 통한 자격의 최초인증절차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규자격인증이 허용된다.

제33조(자격회복 수속 비용) 자격회복신청인은 자격회복 수속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12장 징계과정의 비밀유지

제34조(비밀유지) ① 이 규정에 따라 수행되는 윤리위원회 윤리담당자 및 한국FPSB의 징계관련 기록 등의 모든 절차는 비밀로 하고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윤리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 10년이 초과된 징계기록은 무기명 또는 익명으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비밀분류에서 해제할 수 있다.

제35조(비밀유지의 예외)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진행중인 소송절차와 관련된 법원의 명령 또는 적절한 감독권을 가진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른 경우와 법에서 허용하는 등 비밀유지의 예외로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 제13장 일반규정

제36조(정족수) ①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재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이 나뉘어져 의결 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징계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가장 중한 징계)에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징계)들을 의결 정족수에 이르기까지 순차(징계의 중한 순서 : ① 자격취소, ② 자격정지, ③ 견책 등)로 더하여 그 중 징계 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가장 경한 징계등)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37조(결격사항) ① 윤리위원회 위원 또는 재심 위원은 자기자신 또는 직계가족이나 종업원 등 자신의 관계자가 이해관계인으로 되는 징계절차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자신이 관여하는 경우 이해상충이나 부적절한 관계를 유발하게 되거나 또는 다른 분쟁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징계절차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이해상충이 있는 위원은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장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대신하는 다른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8조(통지 및 송달) ① 이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상자, 징계심의 대상자 및 징계자(이하 "통지대상자"라고 한다)에 대한 모든 통지는 문서로서 직접 전달하거나 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한국FPSB의 기록에 의한 최근의 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전달의 경우에는 수령인으로부터 수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지대상자의 소재불명,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제1항에 의한 통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한국FPSB에 등록된 주소로 송달발송시 통보된 것으로 본다.

제39조(징계기록의 사본) ① 징계결의 또는 심문판정 등의 징계명령을 수령한 통지대상자는 징계기록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통지대상자의 징계기록 중 비밀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징계관련위원회에 상정된 사안과 관련된 기록은 제1항의 사본발급요청의 대상이 된다. 이 요청은 윤리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요청에 따라 발급된 조사대상자의 징계기록의 사본은 심의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목적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장 징계처분의 공시

제40조(공시의 방법) ① 견책, 자격정지, 자격취소의 징계처분과 이에 준하는 징계처분은 한국FPSB(FPSB Korea)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②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에 병행하여 자격인증본부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다.

1. 신문공고에 의한 방법
2. 보도자료, 공시자료 또는 이와 비슷한 자료를 통한 공개
3. FP관련 전문지 등 기타 잡지를 통한 공고
4. 기타 윤리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

제41조(공시의 내용) ① 공시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징계대상자에 관한 사항
  2. 징계처분의 형식과 내용 (이행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조건의 내용을 포함한다)
  3. 징계의 사유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4. 관련규정 또는 법률의 조항
  5. 기타 윤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인이 징계대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내용 중 징계대상자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호로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법인의 주소
3. 대표자 성명

제42조(공시의 시기) 징계처분의 공시는 동 처분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윤리위원회가 특별히 다르게 정하는 때에는 이에 따른다.

제43조(개인정보의 보호) 본 장에 따른 공시내용을 제외한 징계관련기록은 해당 자격인증자가 동의하는 경우 또는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하고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무설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다른 전문자격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교육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는 전문자격의 소지자에 대하여는 해당 전문자격인증기관에 대하여 별도로 이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 및 자격시험 관리규정상의 시험부정행위관련 처리기준에 의한 조치의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한국FPSB의 다른 규정에서 사용되는 “조사분과위원회”와 “심문분과위원회”라는 단어는 이 규정의 개정으로 “조사위원회”와 “심문위원회”로 각각 수정한다.

제3조(폐지규정) 이 규정의 개정으로 징계처분의 공시에 관한 윤리위원회규칙(2003년 7월 24일 제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전부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후에 걸쳐 발생한 사안에 대한 징계절차는 이 전부개정규정에 따르되 개정 전후 규정 중 징계대상자에게 유리한 절차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른다.